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8.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등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의미 규정(안 제2조)
-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가맹점의 등록취소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상품권 잔액 환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5.1. 제정, 2020.7.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지역사랑상품권이 법률의 근거가 없고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정하였음.
- 안 제7조는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음.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안 제10조는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0퍼센트 이상 사

용하였을 시 환급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지역사회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이 2020년 1월 17일 첫 출시되었음.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 판매가 확대되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사용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나 그동안 근거 법률 없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품권제도가 운영됨에 따른 한계가 있었음.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항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법 타당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8 호
----------	---------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7.2.)된 바,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 반영

- 1)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가맹점, 사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
- 2)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4) 상품권 잔액의 환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1. 5. 27. ~ 6. 16.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등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상품권 소지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은 상품권**”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대행사의 선정)**”을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 등의 업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u>과 그 <u>이용의 활성화</u>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영등포 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u>”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 ----- ----- <u>사용</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영등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u>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p> <p>2. “<u>판매대행점</u>”이란 구청장과</p>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생략)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단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사용자 -----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운영대행사의 선정)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유지보수 및 판매(충전)·환전·환불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거나, 중앙정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 등의 업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등포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유통지역) -----
--- 구 -----

-----.

제10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
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
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하
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